

통합중앙회 무엇이 달라지나(I)

김 종 훈

농림부 협동조합과 서기관

1. 협동조합개혁 추진 경위

협동조합은 그동안 우리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개혁의 대상으로 떠올랐으며, 그 동안 개혁이 시도되었으나 기득권층의 반발로 번번히 무산되었다.

이와 같은 협동조합개혁은 IMF 경제위기로 사회전반에 걸쳐 구조조정과 개혁의 파고가 높아지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연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농업인을 비롯한 온 국민속에 폭넓게 확산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협동조합개혁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협동조합을 농업인을 위한 진정한 봉사조직으로 재정비하기 위하여 지난 1998년 4월 13일 생산자 단체, 농업인대표, 학계 등이 참여하는 「협동조합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동위원회는 7차례에 걸친 논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1998년 7월 31일 중앙회 조직개편 방안, 지역조합합병, 책임경영제 확립 등 50여개 과제를 「협동조합개혁방안」으로 선정하여 농림부에 건의하였다.

1998년 7월 28일 농림부는 농·축·인삼협중앙회가 공동개혁안을 정부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공동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설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각 협동조합별로 자체 개혁방안을 1998년 8월 31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강도높은 자체구조조정을 추진하게 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요청한 공동개혁안은 1999년 2월말까지도 마련되지 못하고 각 중앙회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1999년 2월 23일에는 협상 결렬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3월 8일 정부에서는 이미 예고한대로 1999년을 「협동조합개혁의 해」로 정하고, 농·축·인삼업협동조합중앙회의 통합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농림부는 「협동조합개혁방안」을 발표한 직후 농·축·인삼협 등 생산자단체, 농민단체, 각계 전문가 및 정부로 구성된 「협동조합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8일 이후 TV·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정책토론, 학계·농민단체·농업인과의 토론회·간담회 등을 200회 이상 개최하면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당초 정부시안을 보

**7월 1일 통합농협법이 시행되면서 고비용 저효율의
농·축·인삼협중앙회를 통합한 새로운 중앙회가 출범하였고,
새로운 중앙회는 기존 농·축·인삼협중앙회의 재산과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지역농협·지역축협·인삼조합 등
기존 중앙회의 회원조합도 새로운 중앙회의 당원회원으로 되어
중앙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자동승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앙회는
통합되지만 지역농협, 지역축협 및 품목별·업종별 조합은
현행 명칭과 독자성을 가진 채 그대로 유지된다.**

위한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을 4월 19일부터 5월 8까지 입법예고하였고,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6월 14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에서는 농·축·인삼협 등 이해당사자들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공청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여·야의 압도적 지지속에 1999년 8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99년 9월 7일 법률 제6018호로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정부는 '99년 9월 10일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부칙 제3조에 의거, 농·축·인삼협 대표와 각계전문가 15인으로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중앙회 통합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축협중앙회는 신규범 회장을 중심으로 통합농협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통합반대집회와 광고를 하는 등 통합반대 행위를 계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축협중앙회의 방해로 중앙회 통합을 위한 실무작업단 구성, 전산통합작업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중앙회 통합작업에도 차질을 빚게 되었다.

결국 통합중앙회 출범을 1개월 남겨둔 6월 1일 헌법재판소에서 통합농협법을 합헌으로 결정내리고, 6월 10일 신규범 회장이 사퇴하면서 중앙회 통합작업이 제대로 추진되게 되었다.

2. 통합중앙회 이렇게 달라집니다.

7월 1일 통합농협법이 시행되면서 고비용 저효율의 농·축·인삼협중앙회를 통합한 새로운 중앙회가 출범하였고, 새로운 중앙회는 기존 농·축·인삼협중앙회의 재산과 채권·채무·기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지역농협·지역축협·인삼조합 등 기존 중앙회의 회원조합도 새로운 중앙회의 당원회원으로 되어 중앙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자동승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앙회는 통합되지만 지역농협, 지역축협 및 품목별·업종별 조합은 현행 명칭과 독자성을 가진 채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 3개 중앙회의 임원 집행간부 및 대의원은 7월 1일 새농협법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되었지만 직원은 새로운 중앙회의 직원으로 당연 승계되었으며 향후 잉여인력 조정시 각 중앙회로부터 승계한 직원간 동일비율을 적용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되 '98년 1월 1일부터 이법 시행일까지 현행 각 중앙회의 자체 인력 감축실적을 감안하여 결정토록 하였다.

중앙회장은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회원조합에 대한 교육·지도·감사업무와 대정부건의 등 농정활동을 전담하게 되므로 농업인의 권익대변 기능이 더욱 보강되었으며, 중앙회장은 현행과 같이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를 총회에서 선출토록하되

입후보자적 조건을 조합원 신분 2년이상 보유에서 5년이상으로 강화하고, 농업경제 축산경제 및 신용대표이사간 이권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 조정권을 행사하여 중앙회 운영의 원활화를 도모토록 하였다.

중앙회의 사업부문별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대표이사를 두어 사업부문별 대표이사가 소관사업에 대한 경영목표 설정, 사업 및 자금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였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승진·전보는 소관 대표이사가 각각 담당하는 등 대표권·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토록 하였다.

대표이사소관의 업무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장대표자 회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천된 자를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집행간부는 회장이 임면하되 사업전담대표이사 소속의 집행간부는 소관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게 되었다.

특히, 인삼사업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삼사업 집행간부를 반드시 두고 그 업무를 농업경제대표 이사로부터 위임받아 전결처리토록 하였다.

또한, 축산부문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축협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축산부문 대표이사를 추천하면 중앙회장은 총회의 동의없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중앙회장을 회원조합들이 직접 선출함에 따라 감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원조합을 지도·감독하는 조합감사위원회를 중앙회에 설치하고, 위원회는 회원조합의 재산 및 업무 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이상 회원조합을 감사하게 되며,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업무정지, 관련 임·직원 제재도 회원조합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전에는 일선조합에 조합원등이 맡긴 예·적금에 대하여는 중앙회와 달리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예·적금 지급이 불가능하더라도 안전한 환급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았으나, 7월 1일 통합농협법의 시행으로 예·적금의 환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 자보호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회원조합이 예·적금의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조합을 대신하여 기금에서 변제토록 하여 조합의 신용고객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하였다.

중앙회가 회원조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의 확충이 필요하지만 협동조합의 특성상 자기자본 증대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BIS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출자가 필요하나 회원조합으로부터의 재출자를 기대하기 곤란한 실정이므로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회원조합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갖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총전의 농·축·삼협법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일선조합 중, 중앙회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품목조합이나 업종조합이 다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통합농협법에서는 기존 미가입 조합중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조합과 신규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중앙회 가입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일부 60일 이내에 중앙회 가입을 승낙하도



록 의무화하여 일선조합의 중앙회 가입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새로운 협동조합법에서는 조합의 자기자본을 확충하여 조합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인가기준 중 출자금기준을 지역조합은 현행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품목조합은 1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기존 조합중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되는 조합은 법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1년 연장가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설립인가가 취소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앙회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은 농림부장관이 수행하되 신용사업의 건전성 확보부문에 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권을 대폭 인정함으로써 중앙회 신용사업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문제는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게 하여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그 결과를 농림부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2년 이내에 시행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농림부장관은 정부, 협동조합관계자, 농업인대표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법 공포와 함께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법에 명시하였다.

앞으로 농협중앙회는 저비용, 고효율의 작지만 튼튼한 중앙회로 재 탄생함으로써 조합과 농업인을 위해 존재하는 진정한 의미의 중앙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야 될 것이다. ㉞

〈필자연락처 : 02-503-7218〉

천연 미네랄 공급 소식

- ❖ 모든 생명체가 천연미네랄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신비한 성장요소와 안전한 필수영양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 천연미네랄은 각종 미량미네랄을 필요한 조직에 공급하여 빠른 성장, 튼튼한 골격을 가진 어미소로 성장시켜 송아지를 잘 낳고, 유생산 증가, 유지방 증가와 신선하고 안전한 고급우유를 생산케 한다.
- ❖ 천연미네랄은 반추위내 pH를 조절하는 최고의 완충제로서 각종 효소의 증식과 활성화로 더 완전한 소화와 영양분의 흡수가 가능케 되고 천연면역성과 항병력이 생겨 각종 질병을 이기고 장수하여 낙농가의 재산을 증식시켜 준다.
- ❖ 천연미네랄은 높은 양이온 교환능력을 가진 미세한 규산염콜로이드로 세균성 독성물질이나 화학적인 독성을 제거하는 능력이 크며, 사료에 의한 산독증이나 여름, 겨울철 기후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방지하여 온순하고 편안하게 오랜시간 누워서 반추하면서 건강하여 생산성을 높여준다.
- ❖ 천연미네랄은 집약낙농방식에 의한 고능력우와 국제경쟁력을 가진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필수 영양물질이다. 최소한 3개월 이상 공급하여 주면 몇배로 보상받을 수 있다. 지금 연락주십시오

한국 NAF 미네랄

WESTERN MINERALS CO. CALIFORNIA, U.S.A
TEL : (031)964-6367, H.P : 011-446-8252